

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-

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	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: 매 6개월간 120만원	○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	의료급여법 시행령 ('09.1.1부터 소급적용)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	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: 15%	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%에서 10%로 인하	의료급여법 시행령 ('09.6.1시행)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
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	○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불가	○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	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(고시) ('09.6.1시행)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
138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	○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20%	○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10%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2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실시	○ 등록 절차 없이 진료비 경감	○ 의사의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진료비 경감(유예기간: 09.9.30까지)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2)
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50% 경감	○ 신설	○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- 2009.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	보험료경감고시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(02-2023-7398)
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	○ 자연유산 또는 출산후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 사용금지	○ 지원금액을 출산 전후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35)
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확대	○ 사용기간: 분만예정일부 15일까지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 사용가능	○ 사용기간: 분만예정일부 60일까지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 사용가능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35)
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	○ 일반환자: 진찰료총액 + (요양급여비용총액 - 진찰료총액) × 50/100 ○ 의약분업예외환자: 진찰료총액 + (요양급여비용 총액 - 약가총액 - 진찰료총액) × 50/100 + 약가총액 × 30/100	○ 일반환자: 진찰료총액 + (요양급여비용총액 - 진찰료총액) × 60/100 ○ 의약분업예외환자: 진찰료총액 + (요양급여비용 총액 - 약가총액 - 진찰료총액) × 60/100 + 약가총액 × 30/100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						
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육 할인지원사업	○ 시·군·구에만 양곡관리 계좌개설(부득이한 경우만 읍·면·동사무소에 개설) ○ 방문 신청만 접수 가능 ○ 수작업을 통한 업무 수행	○ 모든 읍·면·동 사무소의 계좌(또는 양 곡관리계좌) 활용 또는 개설 ○ 방문신청 외에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가능 ○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상자 관리	'09.5.1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(02-2023-8232)												
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	○ 신설	○ (대상) 가구원 전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, 재산은 2억원 이하 ○ (담보재산) 주택, 건물, 토지, 전세보증 금(주택), 임대보증금(상가) ○ (용자한도) 최고 1천만원,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가구원수</td> <td>1인</td> <td>2인</td> <td>3인</td> <td>4인</td> <td>5인 이상</td> </tr> <tr> <td>월 지급액(만원)</td> <td>49</td> <td>83</td> <td>108</td> <td>132</td> <td>150</td> </tr> </table> * 1천만원 융자시, 7개월(5인이상 가구)~20개월(1인 가구) 지급 ** 교육비 및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○ (용자조건) 대출금리 3%, 2년거치 5년 상환(중도상환 가능) ○ (운영기간) '09.5.25~'09.12.9(신규신청)	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	월 지급액(만원)	49	83	108	132	150	관련법규 없음 '09.5.25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(02-2023-8233)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										
월 지급액(만원)	49	83	108	132	150										
교육지원	○ 신설	○ 교육지원을 신설하여 초·중·고등학생 수업료, 입학금, 교재·부교재비 등 교육 비 지원 ○ 분기별 학비 지원금액 - 초 등 학 생 170,000원, 중 학 생 270,000원, 고등학생 329,000원 및 수업료(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)·입 학금(해당학생 20,000원)	긴급복지지원법 ('09.5.28)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(02-2023-8123)												
긴급복지 지원기간 연장	○ 최장 4개월	○ 최장 6개월	긴급복지지원법 ('09.5.28)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(02-2023-8123)												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외국인지원 특례규정	○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○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 중에 있는 자 ○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이혼하였지만,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 육하고 있는 자 ○ 화재, 범죄, 천재지변으로 피 해를 입은 자(관광객 제외)	○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○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○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○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, 범죄, 천재 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○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긴급복지지원법 ('09.5.28)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(02-2023-8123)
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	○ 매월 말일경 지급	○ 매월 25일로 당겨서 지급	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 ('09.6.1) 기초노령 연금과
각종 민원처리기간 단축	○ 변경신고 처리기간 30일 ○ 미지급연금 청구 처리기간 14일 ○ 이의신청 처리기간 30일 ○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30일	○ 변경신고 처리기간 7일 ○ 미지급연금 청구 처리기간 7일 ○ 이의신청 처리기간 7일 ○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7일	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, 시행규칙 ('09.6.1) 기초노령연금과
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	○ 신설	① 연계의 기본원칙 : 연결통산방식 ②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함 ③ 연계급여 수급요건: 연계기간 20년 이 상, 60세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④ 연계제도 적용 대상: -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 도 간 이동한 자 (다만, '07.7.23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 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 까지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포함) ⑤ 연계급여의 종류: 연계노령연금, 연계퇴 직연금, 연계노령유족연금, 연계퇴직유 족연금이 있음 ⑥ 연계신청기관 및 급여청구기관: 가입이 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가입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도록 함	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('09.8.7.)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(02-2023-834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저소득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담금 경감 확대	○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	○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도 본인일부담금 경감 확대 -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%를,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15%, 도시지역은 하위10%를 대상으로 함	본일일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('09.7.1.)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(02-2023-8564)
지역아동센터	○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- 월평균 220만원/개소	○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- 월평균 320만원/개소	아동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권리와 (02-2023-8733~4)
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	○ 신설	○ (지정 신청) 유치원, 초·중·특수학교,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○ (지정 범위)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(출입문)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○ (지정시 조사사항) 시·군·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, 통학·이용 아동 수, 범죄 발생 우려 여부 조사 ○ (공고) 시·군·구청장은 인터넷,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	아동복지법 ('09.6.14)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(02-2023-8824)
CCTV 설치·관리 및 모니터링	○ 신설	○ (CCTV 설치 및 관리) 시·군·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·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○ (CCTV 모니터링)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적극 활용	아동복지법 ('09.6.14)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(02-2023-8824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 (희망상담창구) 시행	○ 신설	① 초기 면접: 상담 신청 위기 가족에 대해 주거의 어려움, 실직, 법률상담, 수급 신청, 정서적 불안 등 어려움을 진단한 뒤 지원계획 수립 ② 직접 상담 서비스: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, 심리검사·가족상담 및 치료·자조모임 등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접 상담 서비스 제공, 위기가족과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·정서적지지 제공 ③ 연계 서비스: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·지원 ④ 사후 관리: 상담 대상자에 대한 피드백 및 사후 관리 실시	건강가정기본법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(02-2023-8586)
i-사랑카드 제도 실시	○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급	○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(전자바우처)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(정부지원금+부모부담금)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시 어린이집에 지급	영유아보육법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(02-2023-8925)
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	○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음	○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, 0~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('09.7월 시행)	영유아보육법 ('09.7.1)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(02-2023-8934)
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	○ 차상위 계층(최저생계비 120% 이하)	○ 소득하위 50% 이하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	보육료 지원지침 ('09.7) 보육사업기획과 (02-2023-8933)